의 안 번 호	제99호
의결 연월일	2017. 12. 20.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11월 17일, 논산시장

나. 회 부 일 자: 2017년 11월 17일

다. 상 정 일 자: 2017년 12월 20일,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 설명요지(제안 설명자 : 사회적경제과장)

가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」 및 「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」의 개정으로 설비투자보조금 지원기준의 변경과 이주직원보조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, '투자보조금' 및 '이전 및 투자기업'에 대한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O '투자보조금'을 '설비투자보조금'으로 변경 정의하고, '이전 및 투자기업'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(안 제2조)
- 입지보조금 지원범위를 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」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입 금액의 40% 이내로, 설비투자보조금 지원범위를 동 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의 14% 이내로 각 변경 규정함(안 제14조제3항제2호)

- 수도권 소재기업 소속 근로자가 시로 이주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'이주직원보조금' 지원과 지원 취소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(안 제14조의2, 안 제21조제1항제9호·제10호)
-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 략
- 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- 5. 토론요지 : 생 략
- 6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